

## Chapter 11



# 식품위생관계법규

1. 식품위생법의 개념 및 총칙
2.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포장
3. 표 시
4. 식품 등의 공전, 검사
5. 영 업
6. 조리사·영양사,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단체
7. 행정제재, 보칙, 벌칙
8. 기타 관계 법규 (국민건강증진법, 학교급식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2)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 (3)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 (4)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먹는물에 대한 위생관리
- (5)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먹는물에 대한 위생관리

**풀이** <법 제1조>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식품의 정의는 ?**

- (1) 의약품은 제외한 모든 음식물
- (2) 음식물과 먹는 의약품
- (3)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 (4) 음식물과 식품첨가물
- (5) 음식물과 식품첨가물 및 먹는 의약품

**풀이** <법 제2조> 식품이란 의약품으로 섭취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7.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

- |                     |                      |
|---------------------|----------------------|
| ㉠ 식품에 넣는 물질         | ㉡ 식품에 섞는 물질          |
| ㉢ 식품을 적시는 데 사용되는 물질 | ㉣ 식품을 혼합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 |
- (1) ㉠ ㉡ ㉢
  - (2) ㉠ ㉢
  - (3) ㉡ ㉣
  - (4) ㉣
  - (5) ㉠ ㉡ ㉢ ㉣

**풀이** <법 제2조>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8.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화학적 합성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 (1) 분해반응으로 얻는 물질
- (2) 산화반응으로 얻는 물질
- (3) 환원반응으로 얻는 물질
- (4) 중합반응으로 얻는 물질
- (5) 치환반응으로 얻는 물질

**풀이** <법 제2조> 화학적 합성품은 분해반응 외의 화학반응으로 얻은 물질이다.

**9.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기구가 아닌 것은 ?**

- (1) 우유착유기
- (2) 탈곡기
- (3) 도마
- (4) 음식기
- (5) 식육진열장

**풀이** <법 제2조> 기구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또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을 말한다.

**10.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 (1) 조개류 채취                      (2) 우유의 착유                      (3) 식육운반
- (4) 용기제조                        (5) 식용얼음 판매

**풀이** <법 제2조>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을 말하며, 농업 및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의 채취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에서 제외된다. 또한 ① 1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위생종이 등의 제조업 ② 야채와 과일의 세척제, 식품용기의 세척제, 식품가공기구의 세척제 등의 제조업 ③ 물수건의 살균·소독업은 공중위생법의 규제를 받는 영업이다.

**11. 식품위생의 대상으로 옳은 것은 ?**

- (1) 식품포장, 식품조리기구                      (2) 식품포장, 식품세척제
- (3) 식품조리기구, 조리원                      (4) 식품첨가물, 식품세척제
- (5) 식품첨가물, 조리원

**풀이** <법 제2조> 식품위생의 대상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다.

**12. 집단급식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함
- (2) 상시 1회 100명 이상에게 식사제공
- (3)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급식시설
- (4) 영리를 목적으로 함
- (5)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

**풀이** <법 제2조, 영 제2조>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그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13. 식품위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 (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음식과 영업자에 관한 위생
- (2) 화학적 합성품이란 산화반응 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
- (3) 기호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도형
- (4) 영양표시란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소의 효능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

(5)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거나 식품을 적시는 데 사용되는 물질

**풀이** <법 제2조> 정의

**14.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 (1) 위해요소 중점관리
- (2) 자가품질검사관리
- (3)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 (4) 식품이력추적관리
- (5) 위해식품 긴급대응관리

**풀이** <법 제2조> 정의

**15.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2) 제조·가공하여 최소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도 된다.
- (3)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4)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5)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풀이** <법 제2조, 규칙 제2조>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16. 다음 중 식품위생법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

- (1) 식품위생법은 전문 13장 102조로 되어 있다.
- (2) 식품위생법은 1962년 1월 20일에 공포되었다.
- (3) 식품위생법은 법률 제1007호로 공포되었다.
- (4) 식품위생법은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이다.

**풀이** <법 제1조>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7호로 공포되었으며, 전문 13장 102조로 되어 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다.

## 2.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포장

### 1. 식품위생법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위해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 (1) 수입이 금지된 식품
- (2) 영세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 (3)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 (4)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 (5)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풀이** <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서는 ①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 ③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것 ④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⑤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안전성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⑥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⑦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은 판매하지 못한다.

### 2. 식품위생법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

- (1) 방사선 조사처리를 한 식품
- (2)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
- (3) 표시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한 식품
- (4)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 (5)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을 함유한 식품

**풀이** <법 제4조 내지 제10조> 식품의 방사선 조사처리는 허용되어 있다.

### 3.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어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판매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은 ?

- ㉠ 기준과 규격에 맞는 식품첨가물
- ㉡ 기준과 규격에 맞는 기구
- ㉢ 한시적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식품
- ㉣ 한시적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포장

- (1) ㉠ ㉡ ㉢ (2) ㉠ ㉢ (3) ㉡ ㉣ (4) ㉣ (5) ㉠ ㉡ ㉢ ㉣

**풀이** <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법 제9조>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일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가 ?

- (1) 공청회
-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
- (4) 국무회의의 의결
- (5) 대통령의 승인

**풀이** <법 제7조, 제9조, 규칙 제3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것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어도 판매가 허용된다.

5. 다음 중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질병은 ?

- (1) 리스테리아병
- (2) 파스튜렐라
- (3) 선모충증
- (4) 살모넬라병
- (5) 구간낭충

**풀이** <법 제5조, 규칙 제4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과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또는 선모충증에 이환된 동물이나 이러한 질병으로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은 식용으로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하지 못한다.

6. 식품의 규격은 무엇에 관한 규격인가 ?

- (1) 식품의 성분
- (2) 식품의 크기
- (3) 식품의 무게
- (4) 식품의 제조방법
- (5) 식품의 보존방법

**풀이** <법 제7조>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규격은 성분에 관한 규격이다.

7. 식품의 기준은 다음 중 어떤 방법에 관한 기준인가 ?

- (1) 식품의 사용, 조리방법
- (2) 식품의 사용, 섭취방법
- (3) 식품의 조리, 판매방법
- (4) 식품의 보존, 판매방법
- (5) 식품의 판매, 섭취방법

**풀이** <법 제7조>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은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다.

8.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사람은 ?

- (1) 국립보건원장
- (2) 시·도지사
-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5) 국무총리

**풀이** <법 제7조>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다.

9.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 (1) 기준에 맞게 제조하여야 한다.
- (2) 기준과 규격이 고시된 것에 한하여 제조할 수 있다.
- (3) 사용기준은 대상식품에 따라 각기 다르다.
- (4)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어느 식품에도 사용할 수 없다.
- (5) 기준과 규격에 맞게 제조된 것은 모든 식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풀이** <법 제7조>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된 것에 한하여 제조가 허용되며,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맞게 제조하여야 하고, 식품에 사용할 때는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10. 개별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식품 등으로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

- ㉠ 축산물로부터 농축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성분으로 제조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 ㉢ 개별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포장
- ㉣ 화합물에 산화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 (1) ㉠ ㉡ ㉢ (2) ㉠ ㉢ (3) ㉡ ㉣ (4) ㉣ (5) ㉠ ㉡ ㉢ ㉣

**풀이** <법 제7조, 제9조, 규칙 제5조>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은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제출할 수 없다.

11.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은 누가 인정하는가 ?

-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3) 보건산업진흥원장
- (4) 국립보건원장 (5) 국무총리

**풀이** <규칙 제5조>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다.

12. 수출용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은 어느 기준과 규격을 따르는가 ?

- (1) 대한민국 식품위생법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다.
- (2) 세계보건기구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다.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따른다.
- (4)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따른다.
- (5) 제조업자가 정한 기준과 규격에 따른다.

**풀이** <법 제7조, 제9조> 수출용인 식품·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따른다.

13.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할 때 천연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천연첨가물)을 얻는 방법은 ?

- (1) 추출·농축                      (2) 농축·분해                      (3) 정제·분해
- (4) 추출·산화                      (5) 정제·산화

**풀이** <규칙 제5조>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할 경우 천연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농축·분리·정제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말한다.

### 3. 표 시

1.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사람은 ?

- (1) 국립보건원장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4) 국무총리                      (5) 대통령

**풀이** <법 제10조> 표시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표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 ㉠ 식품                      ㉡ 식품첨가물                      ㉢ 기구                      ㉣ 포장

- (1) ㉠ ㉡ ㉢                      (2) ㉠ ㉢                      (3) ㉡ ㉣                      (4) ㉣                      (5) ㉠ ㉡ ㉢ ㉣

**풀이** <법 제10조> 표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다.

3.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경우는 ?

- (1) 타사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 (2) 체험기를 사용한 광고
- (3) 단체추천을 받았다는 광고
- (4)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
- (5) 영농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된장에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표시·광고하는 경우

**풀이** <규칙 제8조>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임·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대해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표시·광고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4. 식품의 유용성에 관하여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에 대한 내용을 벗어난 허위표시로 보는 사항은 ?

- (1) 변비예방 (2) 건강증진 (3) 영양보급 (4) 건강유지 (5) 영양보조

**풀이** <법 제13조, 규칙 제8조> 질병 치료의 효능이나 효과를 표시할 수 없다.

5. 특수용도식품의 경우에도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볼 수 있는 내용은 ?

- (1) 임신 수유기에 영양보급 (2) 병후 회복기 영양보급  
 (3) 당뇨병에 효과 (4) 노약자의 영양보급  
 (5) 환자에 대한 영양보급

**풀이** <법 제13조, 규칙 제8조 관련 별표 3> 특정 질병에 효과는 표기할 수 없다.

6.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

- ㉠ 체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질병예방과 치료효능의 표시  
 ㉢ 해당 제품이 환자식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1) ㉠ ㉡ ㉢ (2) ㉠ ㉢ (3) ㉡ ㉣ (4) ㉣ (5) ㉠ ㉡ ㉢ ㉣

**풀이** <규칙 제8조>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7.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

- (1) 두부류 (2) 우유류 (3) 다류  
 (4) 도시락류 (5)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풀이** <규칙 제6조> [영양표시 대상식품] 레토르트식품,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초콜릿류, 잼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8. 다음 중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은 ?

- (1) 쌀밥 (2) 오리고기 (3) 닭고기  
 (4) 배추김치 (5) 돼지고기

**풀이** <법 제12조> [육류 및 쌀·김치류의 원산지 등 표시]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밥), 배추김치

9. 다음 중 육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로 옳은 것은 ?

- (1) 위탁급식영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2) 일반음식점영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3) 위탁급식영업자, 유흥주점영업자
- (4) 일반음식점영업자, 휴게음식점영업자
- (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휴게음식점영업자

**풀이** <법 제12조, 영 제3조>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를 구이, 탕, 찜, 튀김, 육회(쇠고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조리과정 없이 날것으로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같은 조리방법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육류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10. 일반음식점 영업에서 영업장 면적이 몇 m<sup>2</sup> 이상일 경우에 쌀 또는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가 ?**

- (1) 100                      (2) 200                      (3) 300                      (4) 400                      (5) 500

**풀이** <법 제12조> 식품접객업 영업 중 영업장의 면적이 100m<sup>2</sup> 이상인 자는 사용하는 쌀 또는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1. 원산지 표시의 의무대상이 되는 음식점에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조리 판매할 때 이들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리방법은 ?**

- (1) 구이                      (2) 찜                      (3) 조림                      (4) 탕                      (5) 튀김

**풀이** <법 제12조, 영 제3조>

## 4. 식품 등의 공전, 검사

### 1. 식품 등의 공전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은 ?

- |                 |              |
|-----------------|--------------|
| ㉠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 ㉡ 식품 등의 표시기준 |
| ㉢ 식품의 기준과 규격    | ㉣ 식품영업의 시설기준 |

- (1) ㉠ ㉡ ㉢ (2) ㉠ ㉢ (3) ㉡ ㉣ (4) ㉣ (5) ㉠ ㉡ ㉢ ㉣

**풀이** <법 제14조> 식품 등의 공전에 수록되는 내용은 ①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② 기구,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 ③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다.

### 2. 식품 등의 공전은 누가 작성·보급하는가 ?

- (1) 국립보건원장 (2) 식품공업협회장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4) 보건산업진흥원장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풀이** <법 제14조> 식품 등의 공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작성·보급한다.

### 3. 식품의 위해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해야 한다.  
(2) 위해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면 해당 식품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없다.  
(3) 국민건강상 급박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판매금지를 시킬 때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급박한 위해발생 우려 때문에 일시적 판매금지 조치를 취할 시에는 영업상 불이익을 받는 영업자의 의견은 듣지 않아도 된다.

**풀이** <법 제15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 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4. 위해평가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

- (1) 위험성 확인과정 - 위험성 결정과정 - 노출평가과정 - 위해도 결정과정  
(2) 노출평가과정 - 위험성 결정과정 - 위해도 결정과정 - 위험성 확인과정  
(3) 위험성 결정과정 - 위험성 확인과정 - 노출평가과정 - 위해도 결정과정  
(4) 노출평가과정 - 위험성 확인과정 - 위험성 결정과정 - 위해도 결정과정  
(5) 위험성 확인과정 - 노출평가과정 - 위험성 결정과정 - 위해도 결정과정

**풀이** <영 제4조> [위해평가의 대상 등]

**5. 위해평가의 대상이 아닌 식품은 ?**

- (1) 외국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판매를 금지한 식품
- (2)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된 식품
- (3) 소비자단체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으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식품
- (4)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아 인체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 (5) 식품 관련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으로 인체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풀이** <영 제4조>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 관련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 등으로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식품 등

**6. 위해평가의 대상인 위해요소가 아닌 것은 ?**

- (1) 이물 (2) 식품첨가물 (3) 잔류 동물용 의약품
- (4) 식중독 유발세균 (5) 유통과정 중 오염되는 물질

**풀이** <영 제4조> [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 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제조·가공·조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② 식품 등의 형태 및 이물 등 물리적 요인 ③ 식중독 유발세균 등 미생물적 요인

**7. 다음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이나 영업시설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을 해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 (1) 20개 이상의 식품 관련학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 (2) 20개 이상의 식품 관련조합에서 요청하는 경우
- (3) 20명 이상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 (4) 20개 이상의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 (5) 같은 영업소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풀이** <법 제16조, 영 제6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같은 영업소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경우 해당 식품에 대한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 (3) 긴급대응이 필요한 위해식품의 판매금지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4) 긴급대응이 필요한 위해식품의 판매금지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5) 식품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방송과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풀이 <법 제17조>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9.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방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 (1)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요령 등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 (2) 해당 영업자의 행정제재에 대한 사항
- (3) 위해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해당 식품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 (5) 제조·판매 등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풀이 <법 제17조>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10. 다음 중 긴급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 (1) 국내외에서 위해식품 등의 섭취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 (2)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성분이 식품에서 검출된 경우
- (3) 같은 영업소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 (4)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5) 탄저병에 걸린 동물이나 백신피 등을 원료로 하여 식품을 가공한 경우

●풀이 <법 제17조, 영 제7조, 규칙 제10조>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11.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가 필요없는 경우로 옳은 것은 ?

- (1) 최초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 (2) 최초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 (3) 최초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개발하는 경우
- (4) 최초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 (5) 안전성평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것으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풀이 <법 제18조, 영 제9조>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안전성평가 등]

12.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서 표시대상 품목인 것은 ?

- (1) 우유                      (2) 빙과류                      (3) 두부                      (4) 다류                      (5) 어육가공품

- 13.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 질병관리본부장      (3) 국립검역소장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      (5) 관세청장
- 풀이** <법 제19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4. 식품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도착예정 며칠 전부터 신고할 수 있는가 ?**
- (1) 3일 전      (2) 5일 전      (3) 7일 전      (4) 10일 전      (5) 14일 전
- 풀이** <규칙 제12조> 수입되는 식품 등은 도착예정일 5일 전부터 신고할 수 있다.
- 15. 식품 등을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입신고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
-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2)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3) 국립검역소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관할세관장
- 풀이** <규칙 제12조>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입되는 식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16. 식품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관할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취할 조치로 옳은 것은 ?**
- (1) 수출국으로의 반송, 폐기처분  
 (2) 수출국으로의 반송,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  
 (3) 다른 나라로의 반출,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  
 (4) 폐기처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  
 (5) 다른 나라로의 반출, 위반사항 보완 후 통관
- 풀이** <규칙 제14조> 부적합 통보를 받았을 때는 ①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②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 신고 ③ 그 외의 경우 폐기처분한다.
- 17. 식품 등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검사의 일부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 (1) 모범업소가 수입한 식품      (2) 우수업소가 수입한 식품  
 (3) HACCP 지정업소가 수입한 식품      (4)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한 식품  
 (5) 우수등급영업소에서 수입한 식품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5)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 후 시험기록서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풀이** <법 제22조, 규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체의 일부를 검사 완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하고, 시험기록서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3.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수거식품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맞지 않을 때에는 검체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로부터 얼마동안 보관하여야 하는가 ?**

- (1) 20일            (2) 30일            (3) 40일            (4) 50일            (5) 60일

**풀이** <규칙 제21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는 검체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60일간 보관하고 검사대장은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식품 등의 기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해진 기준·규격 외의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3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4.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행한 식품 등의 검사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영업자에 의해 재검사를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재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 (1)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경우
- (2) 검사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재검사 권고를 받았을 경우
- (4) 검사방법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검사결과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게 나오지 않은 경우

**풀이** <법 제23조, 영 제14조> [식품 등의 재검사] ①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② 검체의 채취·취급방법, 검사방법 또는 검사과정 등이 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25.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옳은 것은 ?**

-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검역소
-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4)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검역소
- (5)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풀이** <법 제24조, 규칙 제23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은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③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④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수산물검사에 한함)이다.

**2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업무범위별로 구분한 식품위생검사기관과 지정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

- (1) 식품위생검사전문기관, 식품위생전문분석기관 - 3년
- (2)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 2년
- (3) 식품위생분석기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 3년
- (4) 식품위생검사전문기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 2년
- (5)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 3년

**풀이** <법 제24조, 제25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구분되며,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7. 지금까지 국내에서 식품으로 사용한 경험이 없는 새로운 원료 농산물의 한시적 기준과 규격을 검토할 수 있는 곳은 ?**

- (1) 식품위생심의위원회      (2) 국립검역소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4) 국립보건원      (5)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풀이** <법 제7조, 제24조, 규칙 제5조, 제23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28.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영업자는 ?**

- (1) 식품소분·판매업자      (2) 식품조사처리업자      (3) 휴게음식점 영업자
- (4) 유통전문판매업자      (5)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

**풀이** <법 제31조, 제44조>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기구 또는 용기·포장류제조업자,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이다.

**29.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1)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면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 (2) 자가품질검사는 원칙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유형별로 실시한다.
- (3) 자가품질검사 기록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4)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출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5) 검사결과 부적합되어 회수대상 식품에 해당되면 검사를 의뢰한 영업자는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풀이** <법 제31조, 규칙 제31조, 규칙 제31조 관련 별표 12>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품목별로 실시하고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하며 검사주기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이다.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검사결과 부적합되어 회수대상 식품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30.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의 자가품질검사를 몇 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가 ?

- (1) 1월                      (2) 2월                      (3) 3월                      (4) 4월                      (5) 6월

**풀이** <규칙 제31조, 규칙 제31조 관련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6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 식품위생감시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

- (1) 영양사면허증 소지자,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한 경험자  
 (2) 영양사면허증 소지자, 조리사면허증 소지자  
 (3)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졸업자, 식품위생관리사 면허증 소지자  
 (4) 식품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조리사면허증 소지자  
 (5) 대학 화학과 졸업자, 식품위생관리사 면허증 소지자

**풀이** <영 제16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은 ①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수산제조기술사,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영양사 ②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 약학, 화학, 식품, 영양, 미생물 또는 위생 관련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③ 외국에서 위의 자격증을 받은 자나 위의 학과를 졸업한 자 ④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⑤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 소정의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32.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1) 제품검사 및 수거검사의 실시, 표시위반 및 과대광고의 단속  
 (2) 제품검사 및 수거검사의 실시,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  
 (3) 표시위반 및 과대광고의 단속,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  
 (4) 표시위반 및 과대광고의 단속, 한시적 기준·규격의 검토  
 (5)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 한시적 기준·규격의 검토

**풀이** <영 제17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② 수입·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 여부 단속 ③ 표시기준위반 및 과대광고의 단속 ④ 출입·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⑤ 시설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검사 ⑥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이행 여부의 확인·지도 ⑦ 조리사, 영양사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지도 ⑧ 행정처분 이행 여부의 확인 ⑨ 식품 등의 압류·폐기 등 ⑩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제거 ⑪ 기타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 확인·지도이다.

33.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시장·군수·구청장 |
| ㉢ 시·도지사     | ㉣ 국립보건원장    |

-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풀이** <법 제32조>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포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34. 관계공무원의 직무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감시원을 두어야 하는 곳은 ?**

- |            |                  |
|------------|------------------|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 나 특별시            |
| 다 광역시·도    | 라 시·군·구(자치구에 한함) |

-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풀이** <법 제32조> 관계공무원의 직무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35.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될 수 없는 자는 ?**

- (1) 조리사 (2) 위생사 (3) 식품기사 (4) 영양사 (5) 수산제조기사

**풀이** <영 제16조, 영 제18조> 조리사는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될 수 없다.

**36.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

- (1)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행위에 관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 (2)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지원
- (3)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지원
- (4)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 (5)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상태 점검

**풀이** <법 제33조, 영 제18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①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상태 점검 ② 유통 중인 식품 등이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제공 ③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지원 ④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지원

**37. 시민식품감사인 직무로 옳은 것은 ?**

- (1) 표시기준 위반시의 지도
- (2)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 여부에 관한 점검
- (3)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 (4) 식품 등의 수거 및 검사지원
- (5)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풀이** <영 제19조>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 ①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 여부에 관한 점검 ②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 여부 점검 ③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등의 금지위반 여부의 점검 ④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의 확인·점검 ⑤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및 건강진단과 위생교육 여부의 확인·점검

**38.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할 수 있는 영업 종류는 ?**

- (1)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2)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3) 식품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 (4)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5)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판매업

**풀이** <영 제19조>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할 수 있는 영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로 한다.

**39. 시민식품감사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소비자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 (2) 영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점검한다.
- (3)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영업자에게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 (4) 업무로 알게 된 영업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 (5)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풀이** <법 제34조> 영업자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해당 영업소의 식품 등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40. 소비자 위생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것은 ?**

- (1) 식품접객영업자 중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
-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3) 식품제조·가공업자
- (4) 기타 식품판매업자
- (5) 식품첨가물제조업자

**풀이** <법 제35조, 영 제20조> 소비자 위생점검 대상 영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기타 식품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중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이다.

## 5. 영 업

**1.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영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 (1) 식품운반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먹는샘물제조업  
 (4) 식품접객업                      (5) 용기·포장류제조업

**풀이** <영 제21조>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 먹는샘물의 제조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이 아니고, 1995년 5월 1일부터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영업으로 바뀌었다.

**2. 식품판매업에 해당되는 영업이 아닌 것은 ?**

- (1) 식용얼음판매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3) 유통전문판매업  
 (4) 식품수입판매업                  (5) 건강보조식품판매업

**풀이** <영 제21조, 규칙 제39조> 식품판매업은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구분된다.

**3. 식품접객업에 해당되는 영업은 ?**

- |             |            |
|-------------|------------|
| (가) 식품조사처리업 | (나) 식품소분업  |
| (다) 유통전문판매업 | (라) 유흥주점영업 |

- (1) 가나타      (2) 가타      (3) 나라      (4) 라      (5) 가나타라

**풀이** <영 제21조>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으로 구분된다.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

- (1) 냉동식품, 빵류                  (2) 발효유, 통조림식품      (3) 빵류, 김치류  
 (4) 드레싱, 건강보조식품      (5) 인스턴트커피, 김치류

**풀이** <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15> 장기보존식품(병·통조림식품, 냉동식품), 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 어육가공품 중 연육, 식용유지(압착식 제외), 인스턴트커피, 특수용도식품, 드레싱, 주류, 기타 식품류(캡슐류)를 제외한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 식품으로 한다.

## 5. 식품소분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

- (1) 전분 (2) 장류 (3) 식용유지 (4) 엿류 (5) 레토르트식품

**풀이** <규칙 제38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벌꿀은 식품소분업의 대상이 되나,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식초는 식품소분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6.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작업장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1)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220 lx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내벽은 1.2m 높이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 설비를 한다.  
 (4) 작업장을 칸막이 등으로 구획지어서는 아니된다.  
 (5) 바닥은 내수처리를 해서는 아니된다.

**풀이** <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식품제조·가공업 작업장은 칸막이 등으로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 7. 식품조사처리업은 어떠한 영업인가 ?

- (1)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2) 식품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완제품을 나누어 포장 판매하는 영업  
 (4)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는 영업  
 (5) 식품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는 영업

**풀이** <영 제21조> [영업의 종류]

## 8. 위탁급식영업의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 (1) 사무소는 있어야 한다.  
 (2) 창고는 임차하여도 된다.  
 (3) 보관시설에는 냉장시설만 있어도 된다.  
 (4) 운반차량은 1대 이상 있어야 한다.  
 (5) 단순가공, 조리 목적일 때는 식재료처리실이 없어도 된다.

**풀이** <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9.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은 ?

- (1)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 (2) 일반음식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3)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4)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 (5) 단란주점영업, 제과점영업

**풀이** <영 제21조>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서는 주류 판매를 할 수 없다.

**10. 식품접객업 중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은 ?**

- (1) 단란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 (2)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 (3) 단란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 (4)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 (5) 휴게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풀이** <영 제24조 영업의 종류> 식품접객업 중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은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다.

**1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 (1) 제조·가공실
- (2) 급수시설
- (3) 판매시설
- (4) 검사실
- (5) 화장실

**풀이** <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항목은 건물의 위치, 작업장(제조·가공실),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화장실이다.

**12.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옳은 것은 ?**

- (1) 단란주점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 (2) 유흥주점영업,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3)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4) 유흥주점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 (5)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식품조사처리업

**풀이** <영 제23조> 영업허가 대상업종은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이며, 이외의 모든 영업은 신고 대상업종이다.

**13. 신고대상영업에 해당되는 것은 ?**

- (1) 식품소분업, 식품제조·가공업
- (2) 식품소분업, 식품조사처리업
- (3) 식품소분업, 단란주점영업
- (4)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조사처리업
- (5) 식품제조·가공업, 단란주점영업

**14. 다음 영업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영업허가를 행하는 것은 ?**

- (1) 단란주점영업
- (2) 식품첨가물제조업
- (3) 식품제조·가공업
- (4) 식품조사처리업
- (5) 식품 등 수입판매업

**풀이** <영 제23조, 제65조>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며,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다.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15. 식품조사처리업자가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고 변경하여야만 하는 사항은 ?**

- (1) 영업자의 지위승계
- (2) 작업장의 증설
- (3) 영업의 휴업·재개업
- (4) 영업소의 소재지
- (5) 식품위생관리인의 선임

**풀이** <영 제24조, 제26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등은 변경시 신고만 하면 된다.

**16. 식품제조업자는 누구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

-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5) 국립보건원장

**풀이** <영 제25조>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냉동·냉장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등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영업의 신고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17.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누구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

-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3) 시·도지사
-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5) 국립보건원장

**풀이** <영 제25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18. 영업신고를 받은 관청은 신고증을 교부한 후 얼마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가 ?**

- (1) 15일 이내
- (2) 1월 이내
- (3) 2월 이내
- (4) 3월 이내
- (5) 4월 이내

**풀이** <규칙 제42조>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증 교부 후 15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9. 품목제조보고서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업자로 옳은 것은 ?**

- (1)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2)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3)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조사처리업자
-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조사처리업자

**풀이** <법 제37조, 규칙 제45조>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는 영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이다.

**20.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 (1) 제품생산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2) 제품생산 직전에 제출해야 한다.
- (3) 제품생산 후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4) 제품생산 후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5)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풀이** <규칙 제45조> 품목제조보고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1.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변경사항을 반드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

- (1) 영업소의 전화번호      (2) 영업소의 명칭      (3) 영업소의 소재지
- (4) 영업자의 성명      (5) 영업소의 면적

**풀이** <영 제26조>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모든 영업자는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소의 면적 및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식품유형을 달리하여 제조하거나 냉동·냉장 차량중감,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 중감의 경우에는 영업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2. 청소년을 유희점객원으로 고용해서 유희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같은 장소에서 식품점객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취소 후 얼마가 경과해야 하는가 ?**

- (1) 1월      (2) 6월      (3) 1년      (4) 2년      (5) 3년

**풀이** <법 제38조> 청소년을 유희점객원으로 고용해서 유희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같은 장소에서 식품점객업을 할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3.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허가취소 후 얼마가 경과해야 하는가 ?

- (1) 1월 (2) 6월 (3) 1년 (4) 2년 (5) 5년

**풀이** <법 제38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동일인이 동일영업을 할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여야 취소된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4.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서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취소 후 얼마가 경과해야 하는가 ?

- (1) 1월 (2) 6월 (3) 1년 (4) 2년 (5) 3년

**풀이** <법 제38조>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서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동일인이 식품접객업을 할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여야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5.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얼마가 경과하여야 하는가 ?

- (1) 1월 (2) 6월 (3) 1년 (4) 2년 (5) 3년

**풀이** <법 제38조> 동일인에 의한 동일영업의 신고는 2년이 경과하여야 취소된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일장소에서 동일영업의 신고는 6월이 경과하여야 취소된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있다.

26. 병육 등의 판매금지 등에 위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가 허가받기 위해서는 취소된 날로부터 얼마나 경과하여야 하는가 ?

- (1) 6월 (2) 1년 (3) 2년 (4) 3년 (5) 5년

**풀이** <법 제38조> 병육 등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가 동일영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7.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얼마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

- (1) 2주 (2) 1월 (3) 2월 (4) 3월 (5) 4월

**풀이** <법 제39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8. 다음 업무에 직접 종사할 경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

- (1) 완전포장된 식품을 제조하는 자
- (2)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자
- (3) 완전포장된 식품첨가물을 운반하는 자
- (4)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운반하는 자

(5)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가공하는 자

**풀이** <규칙 제49조> 건강진단대상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한다)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완전포장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외된다.

**29.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

- (1) 다방종업원
- (2) 일반음식점의 조리사
- (3) 완전포장된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
- (4) 식육운반업자
- (5) 유흥음식점의 유흥접객원

**풀이** <규칙 제49조>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과 살균·소독제의 제조·가공 등에 종사하는 자와 완전포장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는 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30. 건강진단결과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

- (1) B형 간염
- (2) 알코올중독자
- (3) 정신박약자
- (4) 피부병 환자
- (5) 비활동성 B형 간염 환자

**풀이** <규칙 제50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은 제1군 전염병(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결핵(비전염성은 제외), 피부병 및 기타 화농성질환, 후천성 면역결핍증(유흥접객원과 다방의 여종업원에 한함)이다.

**31. 건강진단결과 일반음식점영업에 종사해도 되는 사람은 ?**

- (1) 장티푸스 환자
- (2) 폐결핵 환자
- (3) 후천성 면역결핍증자
- (4) 화농성 질환자
- (5) 세균성 이질 환자

**풀이** <규칙 제50조> 후천성 면역결핍증자는 유흥접객원과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방 형태의 영업에 종사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다.

**32.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정기건강진단은 몇 개 월마다 1회 받아야 하는가 ?**

- (1) 1개월
- (2) 3개월
- (3) 6개월
- (4) 9개월
- (5) 12개월

**풀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4조 관련 별표 2> 정기건강진단 횟수는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의 항목에 대하여 모두 매년 1회이다.

**33.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

- (1) 식품접객업자
- (2) 식품접객업의 종업원

- (3)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영양사                      (4)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 (5) 식품제조·가공업자

**풀이** <법 제4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와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생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34. 식품위생교육의 교육내용으로 옳은 것은 ?**

- ㉠ 식품위생
㉡ 개인위생
㉢ 식품위생시책
㉣ 식품품질관리

- (1) ㉠ ㉡ ㉢      (2) ㉠ ㉢      (3) ㉡ ㉣      (4) ㉣      (5) ㉠ ㉡ ㉢ ㉣

**풀이** <규칙 제51조> 위생교육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이다.

**35. 식품위생교육대상자에 대한 위생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

- (1)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3)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5)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풀이** <규칙 제52조>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시간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은 8시간,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의 경우 4시간, 식품접객업의 경우 6시간,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6시간이다. 사전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한 경우 사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36.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매년 몇 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

- (1) 2시간              (2) 3시간              (3) 4시간              (4) 5시간              (5) 6시간

**풀이** <법 제41조, 규칙 제52조>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식용얼음판매업자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의 경우 3시간,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의 경우에는 2시간,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37.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교육주기와 시간으로 옳은 것은 ?**

- (1) 1년마다 5시간              (2) 1년마다 6시간              (3) 2년마다 5시간

- (4) 2년마다 6시간                      (5) 2년마다 8시간

**풀이** <법 제56조, 규칙 제84조>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38. 다음 중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옳은 것은 ?**

- (1) 대학의 식품위생 관련학과                      (2) 식품공업협회  
 (3)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4) 한국소비자원  
 (5) 대통령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풀이** <규칙 제51조> 식품위생교육의 실시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또는 동업자조합 또는 식품공업협회로 한다.

**39. 식품접객업 신규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시기 및 교육시간으로 옳은 것은 ?**

- (1) 6시간의 사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2) 10시간의 사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영업신고 후 3월 이내에 12시간을 받아야 한다.  
 (4) 영업신고 후 4월 이내에 8시간을 받아야 한다.  
 (5) 사전에 4시간을 받는다.

**풀이** <규칙 제52조> 식품접객업은 6시간 사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40.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동일업종을 영업하고자 할 때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일정기간으로 옳은 것은 ?**

- (1) 6개월                      (2) 1년                      (3) 3년                      (4) 2년                      (5) 1년 6개월

**풀이** <규칙 제52조>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업하고자 할 때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1.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실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기간이 옳은 것은 ?**

- (1) 교육 후 7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  
 (2) 교육 후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  
 (3) 교육 후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  
 (4) 교육 후 1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  
 (5) 교육 후 2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

**풀이** <규칙 제53조>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수료 발급대상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42.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은 식품위생교육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몇 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나 ?

-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5) 4년

**풀이** <규칙 제51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은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43.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 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가 ?

- (1) 6개월 (2) 1년 (3) 1년 6개월 (4) 2년 (5) 3년

**풀이** <규칙 제55조 관련 별표 16>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44.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위탁한 그 제조·가공업자의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해야 하는데 점검주기로 옳은 것은 ?

- (1) 1회/월 (2) 1회/2월 (3) 1회/분기 (4) 1회/반기 (5) 1회/년

**풀이** <규칙 제55조 관련 별표 16>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45.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생산실적을 언제 보고하여야 하는가 ?

- (1) 월마다 다음달 7일 이내 (2) 월마다 다음달 14일 이내  
 (3) 분기마다 다음 분기 10일 이내 (4) 분기마다 다음 분기 15일 이내  
 (5) 매년 당해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풀이** <규칙 제56조> 매년 당해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6. 식품접객영업업자가 수돗물이 아닌 물을 식품의 조리·사용하는 경우 전항목 수질검사는 얼마마다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가 ?

-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5) 4년

**풀이** <규칙 제55조 관련 별표 16> 일부항목 검사는 1년마다, 전항목 검사는 2년마다 1회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수되는 식품 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등이다.

**52.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식품을 제조한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소비자로부터 이물발견의 신고를 접수한 영업자가 이를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시·도지사는 소비자로부터 이물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관련부처에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발견의 신고를 받은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풀이** <법 제46조>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3. 이물의 발견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이물보고서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

-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 관할 도지사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장
- (4) 식품안전정보센터장      (5) 한국소비자원장

**풀이** <법 제46조, 규칙 제60조>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이물보고서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영업과 지정권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

- (1) 식품제조·가공업 : 시·도지사
- (2) 식품첨가물제조업 : 시·도지사
- (3) 유흥주점영업 : 시·도지사
- (4) 일반음식점영업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5) 휴게음식점영업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풀이** <규칙 제61조>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며,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은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55.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식품으로 옳은 것은 ?**

- (1) 냉동피자류, 어묵류, 식육제품
- (2) 냉동면류, 식육제품, 아이스크림
- (3) 어묵류, 김치류 중 배추김치, 식육제품
- (4) 어묵류, 식육제품, 아이스크림
- (5) 냉동피자류, 어묵류, 김치류 중 배추김치

**풀이** <규칙 제62조>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이다.

**56.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주어지는 우대조치로 옳은 것은 ?**

- ㉠ 교육훈련 완화
- ㉡ HACCP 적용품목 광고
- ㉢ 세금의 면제
- ㉣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설치 등에 대한 지원

- (1) ㉠ ㉡ ㉢
- (2) ㉠ ㉢
- (3) ㉡ ㉣
- (4) ㉣
- (5) ㉠ ㉡ ㉢ ㉣

**풀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제24조, 제25조> 출입·검사·수거의 완화 및 HACCP 적용품목 또는 적용업소의 광고가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감면,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대, 식품진흥기금의 시설 개선을 위한 운영 자금융자 및 위생설비지원 등이다.

**57.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 (1) 감시란 인체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인자
- (2)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이란 식품의 위해를 방지·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
- (3) 중요관리점이란 위해요소의 관리가 한계치 설정대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4) 검증이란 위해 여부의 관리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측정수단
- (5) 개선조치란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

**풀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제2조>

**58.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은 누가 고시하는가 ?**

-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3) 국립보건원장
- (4) 국립검역원장
- (5) 식품공업협회장

**풀이** <법 제48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59.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의해 운영실태조사를 몇 년에 몇 회 실시할 수 있는가 ?

- (1) 1년에 1회 이상                      (2) 1년에 3회 이상                      (3) 2년에 1회 이상
- (4) 3년에 1회 이상                      (5) 5년에 1회 이상

**풀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제14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60. HACCP 지도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닌 것은 ?

- (1) 식품기술사
- (2) 식품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를 갖고 식품위생행정에 3년 이상 근무자
- (3) 식품 관련학과 학위취득 후 식품위생행정에 7년 이상 근무자
- (4) 식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식품위생행정에 8년 이상 근무자
- (5) 식품위생행정에 10년 이상 근무자

**풀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제16조> 참조.

61.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준수대상 영업자는 ?

-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류                      ㉡ 두부류
- ㉢ 탄산음료류                                              ㉣ 냉동식품 중 만두류

- (1) ㉠ ㉡ ㉢                      (2) ㉠ ㉢                      (3) ㉡ ㉣                      (4) ㉣                      (5) ㉠ ㉡ ㉢ ㉣

**풀이** <규칙 제62조>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준수대상 영업자] 어육가공품(어육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

62.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영업 및 종업원에게 명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

-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 ㉡ 식품위생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 ㉣ 식품위생검사에 대한 방법

- (1) ㉠ ㉡ ㉢                      (2) ㉠ ㉢                      (3) ㉡ ㉣                      (4) ㉣                      (5) ㉠ ㉡ ㉢ ㉣

**풀이** <규칙 제64조>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명하는 교육 훈련 내용은 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식품위생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③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④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조사·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사항 ⑤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이다.

63. 다음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1) 식품이력추적관리 적용식품
- (2) 모범업소
- (3) 위해요소 중점관리 적용식품
- (4) 방사선 조사식품
- (5) 우수수입업소



**풀이**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별표 3> 참조.

64.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

- (1) 1년                      (2) 2년                      (3) 3년                      (4) 4년                      (5) 5년

**풀이** <법 제49조>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65. 다음 중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로 옳은 것은 ?

- (1)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운영하는 영업자
-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중 연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인 영업자
- (3) 우수수입식품업소로 지정된 영업자
- (4)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
- (5) 주문자상표부착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풀이** <법 제50조>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중 연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영업자,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영업자는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66.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영업소를 무엇이라 하는가 ?

- (1) 우수업소                      (2) 모범업소                      (3) 우수수입식품업소
- (4) HACCP 지정업소              (5) 우수등급영업소

**풀이** <법 제50조> [위생수준 안전평가]

## 6. 조리사·영양사,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단체

### 1.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곳은 ?

- (1) 복어를 조리하는 음식점, 중소기업 집단급식소
- (2) 복어를 조리하는 음식점,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 (3) 복어를 조리하는 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4) 중소기업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 (5) 중소기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풀이** <법 제51조, 영 제36조>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은 ① 집단급식소(국가·지방단체,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법에 의한 법인) ②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다.

### 2.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급식인원 몇 명 이상인 곳인가 ?

- (1) 30명                      (2) 50명                      (3) 80명                      (4) 100명                      (5) 150명

**풀이** <법 제52조, 영 제2조, 제37조>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국가·지방단체,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법에 의한 법인 등이 설립,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로 상시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곳이다.

### 3.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무방한 곳은 ?

- (1) 지방자치단체                      (2) 사회복지시설                      (3) 일반음식점
- (4) 학교기숙사                      (5) 병원식당

**풀이** <영 제37조> 일반음식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 4. 영양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

- (1) 식단작성                      (2) 검식관리                      (3) 구매식품검수
- (4) 운영일지작성                      (5) 식품조리

**풀이** <규칙 제79조>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영양사의 직무는 ①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②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③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④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⑤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이다.

### 5.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면허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 발표 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내용으로 옳은 것은 ?

- (1) 1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2)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한다.
- (3) 2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4)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한다.
- (5)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다.

**풀이** <영양사에 관한 규칙 제8조>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영양사 자격시험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

- (1)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2)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3)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한다.
- (4) 시험실시 30일 이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
-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풀이** <영양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참조. 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7. 영양사 자격시험에서 40% 이상 득점하여야만 하는 과목은 ?**

- (1) 식사요법, 단체급식관리
- (2) 식사요법, 생화학
- (3) 식사요법, 식품위생
- (4) 단체급식관리, 생화학
- (5) 단체급식관리, 식품위생

**풀이** <영양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영양학, 식사요법, 식품학 및 조리원리, 단체급식관리는 각각 40%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8.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옳은 것은 ?**

- (1) 졸업증명서, 호적등본
- (2) 졸업증명서, 의사의 진단서
- (3) 졸업증명서, 인감증명서
- (4) 호적등본, 의사의 진단서
- (5)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풀이** <영양사에 관한 규칙 제9조> 졸업(예정)증명서, 외국의 영양사면허증사본(해당자만), 의사의 진단서, 반명함판 사진 4매이다.

**9. 영양사의 면허증 교부 및 반납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

- (1) 면허증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발급한다.
- (2) 면허증 발급시에 면허대장에 기록한다.
- (3)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즉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 (4) 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다.
- (5) 면허증이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풀이** <영양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참조.

**10. 영양사 면허증을 재교부받아야 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 (1) 면허증의 분실                      (2) 면허증의 훼손                      (3) 주소의 변경
- (4) 성명의 변경                        (5)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풀이** <영양사에 관한 규칙 제13조> 면허증 분실·훼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시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1.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

- (1) 정신질환자                        (2) 전염병환자                        (3) B형 간염환자
- (4) 마약중독자                        (5) 약물중독자

**풀이** <법 제54조>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① 정신질환자(전문 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외) ② 전염병 환자(B형 간염환자는 제외) ③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④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다.

**12.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얼마가 경과해야 만 면허증 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가 ?**

-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5) 4년

**풀이** <법 제54조>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3.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1) 영양사의 교육시간은 매년 10시간이다.
- (2) 조리사의 교육은 매년 5시간이다.
-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직접 교육한다.
- (4)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 (5) 식품으로 인하여 전염병 유행이 우려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대가 우려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풀이** <법 제56조, 규칙 제83조, 제84조> 식품으로 인하여 전염병 유행이 우려되거나 집단식 중독의 발생 및 확대가 우려되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때 받는다. 또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14. 영양사와 조리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집단급식소의 운영자가 조리사 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따로 조리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2) 집단급식소의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경우에는 따로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3) 영양사가 아닌 자는 영양사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4) 교육의 대상자는 면허증을 받은 모든 조리사와 영양사이다.
- (5) 교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한 관련단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풀이** <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 규칙 제83조, 제84조> 교육대상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조리사와 영양사에 한한다.

**15.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 (1) 국민영양조사에 관한 사항
- (2) 중금속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4) 식중독의 방지에 관한 사항
- (5) 위해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의 일시적 판매금지 조치에 대한 사항

**풀이** <법 제15조, 법 제57조> ① 식중독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②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③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의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16.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몇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가 ?**

- (1) 20명                      (2) 40명                      (3) 60명                      (4) 80명                      (5) 100명

**풀이** <영 제39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한다.

**17.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자문하는 기구이다.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5)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풀이** <법 제57조, 영 제39조, 제40조, 제44조> 위원장은 호선한다.

**18.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둔 식품위생단체로 옳은 것은 ?**

- (1) 동업자조합, 한국소비자원
- (2) 동업자조합, 식품공업협회
- (3) 동업자조합, 식품위생검사기관
- (4) 한국소비자원, 식품공업협회
- (5) 한국소비자원, 식품위생검사기관

**풀이** <법 제59조, 제64조>

**19. 동업자조합의 사업이 될 수 없는 것은 ?**

- (1) 조합원의 경영지도
- (2) 조합원의 교육훈련
- (3)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4) 제품의 출하량 조절 및 가격담합
- (5)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풀이** <법 제60조> 동업자조합은 영업의 종류나 식품의 종류별로 설립할 수 있으며, 동업자 조합의 사업은 ①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② 조합원 영업시설개선지도 ③ 조합원 경영지도 ④ 조합원 및 종업원 교육훈련 ⑤ 조합원 및 종업원의 복지증진사업 ⑥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이다.

**20. 한국식품공업협회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 (1) 식품공업에 관한 조사·연구
- (2) 식품·식품첨가물의 시험·검사업무
- (3) 영업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도
- (4) 식품위생법 위반자의 적발 및 보고
-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풀이** <법 제65조>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식품공업협회의 사업은 ① 식품공업에 관한 조사, 연구 ② 식품, 식품첨가물 및 그 원재료의 시험, 검사 ③ 식품위생교육 ④ 식품,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자의 영업시설개선에 관한 지도 ⑥ 회원을 위한 경영지도 등이다.

**21.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

- (1) 식품안전연구센터
- (2) 식품이력추적센터
- (3) 식품안전정보센터
- (4) 식품이력추적관리센터
- (5) 식품위생심의위원회

**풀이** <법 제67조> [식품안전정보센터의 설립]

## 7. 행정제재, 보칙, 벌칙

1. 행정제제조치에 해당되는 것은 ?

- (1) 영업소 폐쇄, 시설개수명령                      (2) 영업소 폐쇄, 벌금
- (3) 영업소 폐쇄, 과태료부과                      (4) 벌금, 시설개수명령
- (5) 벌금, 과태료부과

**풀이** 행정제재는 시정명령, 폐기처분, 압류, 시설개수명령, 허가취소, 품목 제조정지, 영업허가취소, 폐쇄조치, 면허취소, 과징금처분 등의 행정처분이다. 징역과 벌금은 형벌인 벌칙에 해당된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다.

2. 위해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위해식품의 긴급회수문을 몇 개의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는가 ?

- (1) 1개 이상    (2) 2개 이상    (3) 3개 이상    (4) 4개 이상    (5) 5개 이상

**풀이** <영 제51조>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식품 등의 회수 및 공표시에는 영업자가 하는 광고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 중 관련이 없는 것은 ?

- (1) 제품명            (2) 제조일            (3) 제조방법            (4) 회수방법            (5) 영업자 주소

**풀이** <영 제51조> 식품 등의 회수 및 공표계획에는 제품명, 제조일(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회수사유, 회수방법, 회수 영업자 명칭, 영업자 주소, 연락처,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4차 위반의 경우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 (1) 시정지시                      (2) 영업정지 1개월                      (3) 영업정지 3개월
- (4) 영업정지 6개월                      (5) 영업허가취소

**풀이** <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으로 한다.

5.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몇 개월 이상 휴업할 때에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가 ?

- (1) 1개월            (2) 2개월            (3) 3개월            (4) 6개월            (5) 12개월

**풀이** <법 제75조>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할 때 영업허가취소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6. 다음 중 1차 위반시에도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

- (1)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했을 때
- (2)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 (3) 종업원들에 대한 위생교육을 시키지 않았을 때
- (4)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 또는 영양사 업무를 했을 때

**풀이** <법 제54조, 제80조, 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II. 개별기준 4> 1차 위반시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①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임이 늦게 밝혀졌을 때 ②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 또는 영양사 업무를 했을 때이다.

**7.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면허증의 타인 대여금지조항을 몇 회 위반하면 면허증이 취소되는가 ?**

- (1) 1회                      (2) 2회                      (3) 3회                      (4) 4회                      (5) 5회

**풀이** <법 제54조, 제80조, 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II. 개별기준 4> 조리사 또는 영양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3차 위반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이 된다.

**8. 영양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

- |              |            |
|--------------|------------|
| ㉠ 면허 대여시     | ㉡ 마약중독자일 때 |
| ㉢ 전염병에 걸렸을 때 | ㉣ 약물중독자일 때 |

- (1) ㉠ ㉡ ㉢                      (2) ㉠ ㉢                      (3) ㉡ ㉣                      (4) ㉣                      (5) ㉠ ㉡ ㉢ ㉣

**풀이** <법 제54조, 제80조, 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II. 개별기준 4>

**9. 다음 중 청문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처분은 ?**

- (1) 영업소 폐쇄명령                      (2) 영업허가의 취소
- (3) 영양사나 조리사의 면허취소                      (4) 우수업소의 지정취소
- (5)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지정취소

**풀이** <법 제81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②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지정취소 ③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④ 면허의 취소

**10. 과징금으로 같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

- (1)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 (2) 품목 제조정지, 영업소 폐쇄명령
- (3) 품목 제조정지, 영업허가취소
- (4) 영업소 폐쇄명령, 영업정지
- (5) 영업소 폐쇄명령, 영업허가취소

**풀이** <법 제82조>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 유독물질이 들어 있는 위해식품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에 대해 해당 식품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 ㉠ 영업허가의 취소
- ㉡ 2개월 이상 영업정지
- ㉢ 영업소 폐쇄명령
- ㉣ 품목류 제조정지

- (1) ㉠ ㉡ ㉣
- (2) ㉠ ㉣
- (3) ㉡ ㉣
- (4) ㉣
- (5) ㉠ ㉡ ㉣ ㉣

**풀이** <법 제83조>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것, 안전성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한 유전자재조합식품,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않고 수입한 것,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것 등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② 병든 동물 고기의 판매 등 금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판매 등 금지, 유독기구 등의 판매 등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2.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위반사항의 공표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영업의 종류
- (2) 회수량
- (3) 위반내용
- (4) 단속기관
- (5) 행정처분내용

**풀이** <법 제84조, 영 제58조> [위반사실 공표]

**13.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는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

- (1) 시·도지사
- (2) 보건소장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4) 국립보건원장
- (5)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풀이** <법 제86조>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4. 식중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기관의 장은 ?**

-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2) 시장·군수·구청장
- (3) 국립보건원장
-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5) 시·도지사

**풀이** <법 제86조> 식중독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진단하거나 검안한 의사·한의사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건(지)소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15. 의사·한의사가 식중독을 보고할 때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은 ?

- ㉠ 보고자의 주소·성명
- ㉡ 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 식중독의 원인
- ㉣ 보호자 주소·성명

- (1) ㉠ ㉡ ㉢ (2) ㉠ ㉢ (3) ㉡ ㉣ (4) ㉣ (5) ㉠ ㉡ ㉢ ㉣

▶ 풀이 <규칙 제93조> 의사·한의사가 식중독을 보고할 때에는 ① 보고자의 주소·성명 ② 환자 또는 사망자의 주소·성명, 생년월일 및 사체 소재지 ③ 식중독의 원인 ④ 발병 연월일 ⑤ 진단 또는 검사연월일을 포함한다.

16. 식중독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는 사람은 ?

-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국립보건원장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보건사회연구원장

▶ 풀이 <법 제87조>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17. 보건소장이 식중독 발생시 수행하는 원인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 식중독 원인식품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해 실시하는 환경조사
- ㉡ 식중독 환자 혈액이나 배설물에 대한 미생물학적 조사
- ㉢ 식중독의 원인이라 예상되는 식품에 대한 이화학적 시험에 의한 조사
- ㉣ 섭취식품과 환자간의 식중독 연관성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 (1) ㉠ ㉡ ㉢ (2) ㉠ ㉢ (3) ㉡ ㉣ (4) ㉣ (5) ㉠ ㉡ ㉢ ㉣

▶ 풀이 <영 제63조> [식중독 원인의 조사]

18.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 국립보건원장  
 (3) 동장·면장 (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5)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풀이 <법 제88조>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

- (1)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 (2) 조리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 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3) 매년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4)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5)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풀이** <법 제88조>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20.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 (1)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2)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지원
- (3) 위탁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용자사업
- (4)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 (5)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풀이** <법 제89조, 영 제61조>

**21.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1) 가금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2) 백선희와 사리풀 등을 원료로 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조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 탄저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5)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판매를 금지시킨 식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풀이** <법 제93조, 제94조, 제95조> [벌칙]

**2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되는 것은 ?**

㉠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의 판매      ㉡ 유독기구의 판매  
 ㉢ 식품 등의 폐기명령 위반      ㉣ 영업허가 받지 않고 영업할 때

- (1) ㉠ ㉡ ㉢      (2) ㉠ ㉢      (3) ㉡ ㉣      (4) ㉣      (5) ㉠ ㉡ ㉢ ㉣

**풀이** <법 제9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되는 경우는 ① 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 위반(썩은 것, 유독물 오염, 병원미생물 오염, 불결한 것, 무허가제품, 수입금지품 또는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것 등) ② 법 제5조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 위반 ③ 법 제6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의 판매 등 금지규정 위반 ④ 법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규정 위반 ⑤ 법 제37조 제1항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이다.

**2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되는 경우는 ?**

- (1)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의 판매
- (2) 병든 고기의 판매
- (3) 무허가 영업행위를 했을 때
- (4) 수입신고 없이 식품 등을 수입했을 때
- (5) 허위표시, 과대광고, 과대포장을 했을 때

**풀이** <법 제9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경우는 ①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판매, 사용 등 ②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용기 등의 제조, 판매, 사용 등 ③ 수입신고 없이 식품 등의 수입 ④ 거짓이나 부정하게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고의나 중대과실로 거짓의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 식품위생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영업시간과 영업행위 제한규정을 지키지 않은 식품접객영업자 ⑥ 식품 등의 폐기조치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⑦ 식품 등의 원료·제조방법·성분·배합비율 변경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⑧ 허가대상영업의 경우 영업취소,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했을 때이다.

**2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경우는 ?**

- (1) 수입신고 없이 식품 등을 수입했을 때
- (2) 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한 종업원
- (3) 수입금지품을 판매했을 때
- (4)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때
- (5)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했을 때

**풀이** <법 제9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경우는 ① 표시기준에 맞지 않을 때, 허위표시나 과대광고금지 위반시 ② 위해 여부 확인 전까지의 긴급대응 해당 식품의 제조·판매금지 위반시 ③ 자가품질검사 불이행시 ④ 영업자의 비밀을 누설한 시민식품감사인 ⑤ 폐업 등 신고의무 불이행시 ⑥ 신고대상 영

업을 영업신고 없이 영업시 ⑦ 지위승계자의 기간 내 신고 불이행시 ⑧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않는 영업자 ⑨ 조리사나 영양사 명칭 허위 사용시 ⑩ 수입식품 통과 전 검사 의무 불이행시 ⑪ 식품위생감시원의 출입·검사·수거 등 방해시 ⑫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우수수입업소 ⑬ 시설기준에 맞지 않을 때 ⑭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준수영업자 ⑮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⑯ 허가관청에서 불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영업자 ⑰ 영업소 폐쇄명령 위반과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신고대상영업자 ⑱ 품목 제조정지명령 위반시 ⑳ 관계공무원의 게시문 무단제거 및 손상한 자 등이다.

**25.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지 않은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에 대한 벌칙은 ?**

-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이를 병과한다.
-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이를 병과한다.
-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이를 병과한다.

**풀이** <법 제96조> [벌칙]

**26.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벌칙은 ?**

-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이를 병과한다.
-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이를 병과한다.
-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이를 병과한다
-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풀이** <법 제98조> [벌칙]

**27.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육류의 원산지나 쌀·김치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은 ?**

-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4)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5)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풀이** <법 제101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①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육류의 원산지 등 또는 쌀·김치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이다.

**28. 건강진단이나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

-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5)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풀이** <법 제101조> [과태료]

**29.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명칭을 허위로 사용했을 때의 벌칙은 ?**

-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5)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풀이** <법 제97조> [벌칙]

**30.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 대한 벌칙은 ?**

-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5)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풀이** <법 제101조> [과태료]

**31.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

- (1) 과대광고, 과대포장을 했을 때
- (2)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
- (3) 집단급식소의 위생적 관리사항을 위반한 자
- (4) 위해 여부 확인 전까지의 긴급대응 해당 식품의 제조·판매금지 위반시
- (5)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때

**풀이** <법 제101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①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았을 때 ②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한 종업원 ③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영업자 ④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받지 않았을 때 ⑤ 위생교육 미필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영업자 ⑥ 식중독 환자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와 한의사 ⑦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 해촉 보고 불이행 ⑧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사실을 허가관청에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 ⑨ 식품·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보고 불이행 또는 허위보고 영업자 ⑩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 보고 불이행 또는 허위보고 ⑪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허위사용 ⑫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명령 위반 ⑬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한 영업자 ⑭ 신고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를 한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 ⑮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집단급식소 운영자 등이다.

**32. 위반사실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사항은 ?**

- |              |                   |
|--------------|-------------------|
| ㉠ 영양표시 기준위반  | ㉡ 쌀·김치류의 원산지 표시위반 |
| ㉢ 식육원산지 표시위반 | ㉣ 영양사의 교육명령위반     |

- (1) ㉠ ㉡ ㉢ (2) ㉠ ㉢ (3) ㉡ ㉣ (4) ㉣ (5) ㉠ ㉡ ㉢ ㉣

**풀이** <법 제101조> 영양사가 교육명령위반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3.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벌칙은 ?**

-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4)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5)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풀이** <법 제101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①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불이행 ②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식품광고에 유통기한 확인권장 미포함 ③ 해당 식품 거래기록 보관 불이행 ④ 유흥주점영업자의 종업원명부 비치 불이행 ⑤ 식품접객 영업자의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보관 불이행 ⑥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 ⑦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 신고 불이행 등이다.

## §. 기타 관계 법규 (국민건강증진법, 학교급식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국민건강증진법의 목적은 ?**

- (1)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 (2)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 (3) 식생활 개선에 기여
- (4) 식품으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방지
- (5)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 함양

**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양개선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

- (1) 영양순회 지도사업
- (2)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 (3)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 (4) 불소용액 양치사업
- (5) 영양개선 조사사업

**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해 영양교육사업,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영양상태에 관한 평가사업, 지역사회의 영양개선사업을 수행한다.

**3. 국민영양조사 시기는 언제인가 ?**

- (1) 조사연도의 2월
- (2) 조사연도의 5월
- (3) 조사연도의 7월
- (4) 조사연도의 9월
- (5) 조사연도의 11월

**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0조> 11월에 실시한다.

**4. 국민영양조사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조사구역과 기준을 정한다.
- (2) 3년마다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다.
- (3) 노인·임산부 등은 따로 조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 (4)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통보한다.
- (5) 대상자의 전출이 있을 때에는 구역 내에서 재선정한다.

**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0조, 규칙 제11조> 시·도지사가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된 해당 가구주에게 통보한다.

**5. 국민영양조사의 조사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

- (1) 건강상태조사, 식품섭취조사, 식생활조사
- (2) 건강상태조사, 식품섭취조사, 기호도조사
- (3) 건강상태조사, 식생활조사, 음주량조사
- (4) 식품섭취조사, 식생활조사, 기호도조사
- (5) 식품섭취조사, 식생활조사, 가족수조사

**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1조> 조사항목은 건강상태조사, 식품섭취조사, 식생활조사이다.

**6. 식품섭취조사의 세부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

- (1) 식품의 섭취횟수, 식품재료
- (2) 식품의 섭취횟수, 외식횟수
- (3) 외식횟수, 식품섭취 과다 여부
- (4) 외식횟수, 식품재료
- (5) 식품의 섭취횟수, 식품섭취 과다 여부

**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2조> 식품섭취조사는 조사가구의 일반사항, 일정한 기간의 식사상황, 일정한 기간의 식품섭취상황에 대하여 행하며, 그 세부내용은 식품의 섭취횟수 및 식품의 섭취량에 관한 사항, 식품재료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이다.

**7. 식생활조사의 세부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

- (1) 규칙적인 식사 여부, 식품재료
- (2) 규칙적인 식사 여부, 식품의 섭취량
- (3) 식품섭취량, 식품재료
- (4) 식품섭취량, 영·유아 이유보충식 종류
- (5) 규칙적인 식사 여부, 영·유아 이유보충식 종류

**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2조> 식생활조사는 가구원의 식사일반상황, 조사가구의 조리시설과 환경, 일정한 기간에 사용한 식품의 가격 및 조달방법에 대하여 행하며, 그 세부내용은 규칙적인 식사 여부, 식품섭취의 과다 여부, 외식횟수, 영·유아 수유시간 및 이유보충식 종류,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다.

**8. 영양조사원의 자격요건으로 옳은 것은 ?**

- (1) 의사, 약사
- (2) 의사, 영양사
- (3) 영양사, 조리사
- (4) 영양사, 약사
- (5) 간호사, 조리사

**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의사·영양사·간호사,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이수한 자로 한다.

**9. 영양지도원으로 가장 우선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

- (1) 의사
- (2) 약사
- (3) 간호사
- (4) 영양사
- (5) 한의사

**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영양사가 우선이며,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가 없을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로 한다.

**10.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 (2) 보건교육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균형된 식생활을 통한 건강 개선에 관한 교육
- (3) 국민건강증진기금이란 이 법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로 조성함
- (4) 영양개선이란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지도
- (5)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기구

**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 [정의]

**11. 보건교육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1)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영양교육자료의 개발에 관한 사항
- (2)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집단급식소의 급식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 (3)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영양교육자료의 개발에 관한 사항
- (4)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집단급식소의 급식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 (5)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은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만성 퇴행성 질환 등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건강증진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12. 시·도 영양지도원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1) 영양지도의 기획·분석·평가, 지역주민의 영양평가 실시
- (2) 보건소의 영양업무지도, 지역주민의 영양지도 및 상담
- (3) 집단급식시설의 급식업무지도, 영양교육자료의 개발
- (4) 영양지도의 계획·분석, 영양조사 및 효과측정
- (5) 집단급식시설의 급식업무지도, 보건소의 영양업무지도

**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시·도 영양지도원의 업무는 영양지도의 기획·분석·평가 및 영양상담, 보건소의 영양업무지도,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급식업무지도, 영양조사 및 효과측정, 홍보 및 영양교육, 기타 영양과 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13. 시·군·구의 영양지도원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1) 지역주민의 영양지도 및 상담, 식품접객업에 대한 위생지도

- (2) 지역주민의 영양지도 및 상담,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과약
- (3) 지역주민의 영양지도 및 상담, 임산부나 영·유아의 건강진단
- (4)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과약, 식품접객업에 대한 위생지도
- (5)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과약, 임산부나 영·유아의 건강진단

**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시·군·구 영양지도원의 업무는 영양지도의 계획·분석, 지역주민의 영양지도 및 상담,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과약과 급식업무지도, 영양조사 및 지역주민의 영양평가실시, 영양교육자료의 개발·홍보 및 교육, 지역주민의 영양조사결과 자료활용, 기타 영양과 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14.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자는 ?**

-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광역시장·도지사
- (4) 시장·군수·구청장      (5) 질병관리본부장

**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5.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 시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자가 아닌 것은 ?**

-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 특별시장      (3) 광역시장·도지사
- (4) 시장·군수·구청장      (5)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 시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6. 국민의 건강상태·식품 섭취·식생활조사 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는 ?**

-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도지사
- (4) 광역시장      (5) 시장·군수

**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상태·식품 섭취·식생활조사 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7.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되는 곳은 ?**

- (1) 보건복지가족부, 특별시      (2)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3) 특별시, 광역시 및 도      (4) 보건복지가족부, 광역시 및 도
- (5)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역시 및 도

**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18. 시·도지사는 국민영양조사의 조사대상 가구가 선정된 때에는 조사가구선정통지서를 해당 가구주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

-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질병관리본부장
- (4) 보건소장                      (5) 대한영양사협회장

**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1조> 국민영양조사의 조사대상 가구가 선정된 때에는 시·도지사는 조사가구선정통지서를 해당 가구주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국민영양조사의 조사내용 중 건강상태조사의 세부내용이 아닌 것은 ?**

- (1)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을 앓거나 앓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 (2) 식품 섭취의 과다 여부에 관한 사항
- (3)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활동제한의 정도에 관한 사항
- (4) 혈압 등 신체계측에 관한 사항
- (5) 흡연·음주 등 건강과 관련된 생활태도에 관한 사항

**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2조> 영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상태조사의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을 앓거나 앓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활동제한의 정도에 관한 사항, 혈압 등 신체계측에 관한 사항, 흡연·음주 등 건강과 관련된 생활태도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 시·도지사가 국민영양지도 담당자를 둘 경우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 영양지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

- (1) 의사, 약사                      (2) 의사, 간호사                      (3) 간호사, 한의사
- (4) 약사, 간호사                      (5) 약사, 한의사

**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영양지도원은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영양사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21.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원 직무만으로 된 것은 ?**

- (1) 건강상태조사원, 식품섭취조사원, 식생활조사원
- (2) 건강상태조사원, 식품섭취조사원, 기호도조사원
- (3) 건강상태조사원, 식생활조사원, 건강증진조사원

- (4) 식품섭취조사원, 식생활조사원, 기호도조사원
- (5) 식품섭취조사원, 식생활조사원, 건강증진조사원

**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3조> 국민영양조사원은 건강상태조사원, 식품섭취조사원 및 식생활조사원으로 구분한다.

**22. 학생들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은 ?**

- (1) 학교보건법                      (2) 학교급식법                      (3) 교육법
- (4) 식품위생법                      (5) 국민건강증진법

**풀이** <학교급식법 제1조>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3. 학교급식의 대상이 되는 곳으로 옳은 것은 ?**

- (1) 초등학교, 대학교              (2) 초등학교, 유치원              (3) 대학교, 고등학교
- (4) 대학교, 유치원              (5) 초등학교, 고등학교

**풀이**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의 대상은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②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③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④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이다.

**24.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과 경비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조직은 ?**

- (1) 학교운영위원회              (2) 학교급식운영위원회              (3) 학교급식위원회
- (4) 학교급식지원센터              (5)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풀이** <학교급식법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25. 학교급식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1) 학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조리실, 식품보관실, 갱의실이다.
- (2) 급식관리실은 오염방지를 위해 조리장과 차단되어야 한다.
- (3) 둘 이상의 인접학교라 할지라도 독립적으로 급식을 위한 시설을 해야 한다.
- (4) 조리장은 조리기기, 배식시설, 식재료보관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5)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풀이** <학교급식법 제6조>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급식시설 종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조리장, 식품보관

실, 급식관리실, 편의시설).

**26. 학교급식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1) 학교의 장은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2) 급식에 관한 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및 조리종사자 인건비를 말한다.
- (3) 학교급식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 (4) 학교급식위탁업자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해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5) 학교장은 필요시 식품위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시설에 대해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풀이** <학교급식법 제2조> 학교급식은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으로 학교의 장은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27. 학교급식 조리장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조리장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야 한다.
- (2) 조리장은 식품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한다.
- (3) 조명은 100 lx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4) 조리장은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처리실, 조리실 및 식기구세척실 등을 벽과 문으로 구획하여 일반작업구역과 청결작업구역으로 분리한다.
- (5) 조리장 출입구에는 신발소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풀이**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규칙 제3조 관련 별표 1> 참조. 조명은 220 lx 이상이어야 한다.

**28. 학교급식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조리장의 내부벽은 내구성, 내수성이 있는 표면이 미끄럽지 않은 재질이어야 한다.
- (2) 식품보관실에는 식품보관실과 소모품보관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급식관리실, 휴게실은 외부로부터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해야 한다.
- (4) 휴게실은 외출복장과 위생복장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옷장을 두어야 한다.
- (5) 편의시설은 조리종사자 수에 따라 필요한 옷장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풀이** <시행령 제7조, 규칙 제3조 관련 별표 1> 조리장의 내부벽은 내구성, 내수성이 있는 표면이 매끈한 재질이어야 한다.



**풀이** <시행규칙 별표 1> 조리장 검수구역의 조명도는 540 lx 이상이어야 한다.

**34.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 (2)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하도록 한다.
- (3)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의 준수이행 여부의 확인·지도는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4) 출입검사에 의해 식재료를 수거한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5) 학교급식 공급업자는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풀이** <시행규칙 제8조>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35.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1) 탄수화물 : 지방 : 단백질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70%, 7~20%, 15~30%가 되도록 한다.
- (2)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지 않도록 한다.
- (3)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은 학교급식영양관리기준의 평균필요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준수이행 여부의 확인·지도는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5) 영양관리기준에 따른 식단작성시 가급적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풀이**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36. 학교급식 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상의 어느 영업의 신고를 한 자인가 ?**

- (1) 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2) 식품제조·가공업, 위탁급식영업
- (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운반업
- (5) 위탁급식영업, 식품운반업

**풀이** <시행령 제11조> 학교급식 공급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어야 한다.

37.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해당되는 것은 ?

- |            |                 |
|------------|-----------------|
| ㉠ 식품비      | ㉡ 급식운영비         |
| ㉢ 급식시설·설비비 | ㉣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

- (1) ㉠ ㉡ ㉢ (2) ㉠ ㉢ (3) ㉡ ㉣ (4) ㉣ (5) ㉠ ㉡ ㉢ ㉣

**풀이** <학교급식법 제2조>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8. 다음은 학교급식 경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 (2)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를 지원할 수 있다.
- (4)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의 부담이 원칙이나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와 종사자 인건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5) 급식운영비는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로 구성된다.

**풀이** <학교급식법 제8조, 시행령 제9조> 급식운영비 중 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9.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으로 옳은 것은 ?

- (1) 조리작업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2) 급식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3) 식품취급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40cm 이상에서 한다.
- (4) 건강진단 기록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 (5) 가열조리는 중심부가 74℃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풀이** <시행규칙 별표 4>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식품취급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의 높이에서 실시해야 하며 급식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소독 또는 살균해야 한다.

40.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학교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2) 학교급식 관계교직원은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를 비치하고 보관해야

한다.

- (3) 학교급식 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4) 학교장은 매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급식운영비의 사용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 (5) 학교장은 급식인원과 식단, 영양공급량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일지를 비치하고 이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풀이** <시행규칙 제7조> 학교장은 매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의 사용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41.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수거한 검체를 검사할 수 없는 기관은 ?**

- (1) 광역시·도 보건환경연구원                      (2) 시·군·구의 보건소
-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 국립보건원
- (5)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풀이** <시행규칙 제9조> [수거 및 검사의뢰 등] 검체를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의 보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42. 부정식품 및 식품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법은 ?**

- (1) 식품위생법                                              (2) 공중위생법
- (3) 보건범죄단속법                                      (4) 의료법
- (5)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풀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43. 부정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관련하여 처벌 받지 않는 경우는 ?**

- (1) 식품첨가물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자
- (2) 허가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3) 위조품 또는 변조품임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자
- (4)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판매한 자
- (5) 표시기준에 맞지 않은 식품을 판매한 자

**풀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부정식품제조 등의 처벌]